

- 정부에서는 기술개발사업 선별하여 조사 실시

본 자료는 2005.1.25(화)夕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 산업자원부 공보관실	작성과	원전사업기획단 방사성폐기물과
		담당	과장 정승일 서기관 정해권
		전화번호	2110-5532

<<http://www.mocie.go.kr>, 2005.1.25(화) 배포, 총 3쪽>

중·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

- 금 1.25(화) 개최된 제4차 국무회의에서 중·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의결
 - 그간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치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등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우선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으며,
 - 이에 따라 정부는 중·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부지선정 절차공고에 앞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
 - 정부에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,
 - 동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년도 부지선정사업 추진 및 지역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
-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처분시설에 대한 정의, 유치지역 지원체계 및 내용, 지역개발 촉진 특례규정 등으로 구성.
- ① 먼저, 법안 제목 및 용어정의에서 유치시설이 중·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임을 명확히 정의

- 이는 지난해 말 개최되었던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의 중·저준위 분리 및 우선추진 방침을 명확히 함으로써,

- 앞으로 중·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도 추가로 들어 올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
② 둘째,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구성 및 설치를 통해 유치지역에 대한 범 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

- 동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,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며,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한편,
- 산자부 장관과 지원 사업을 관할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지역 지원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여 지원계획의 집행을 담보

③ 셋째,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약 3,000억원 (잠정)을 사업개시 초기단계에서 지급하고 처분시설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역지원 재원의 조달 근거를 규정

-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마련되는 특별지원금은 초기 건설 단계에 지급되며 이를 통해 유치지역 지자체는 지역개발, 관광진흥, 농수산물 판로지원, 지역주민의 소득증대·생활안정·복리증진 등에 활용
- 아울러, 처분시설의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연간 일정 규모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역지원 재원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

* 지원규모 및 방식은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에 규정

- 그간의 지원제도는 시설의 건설 초기단계에 지역지원이 집중되어 정작 시설의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지원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,
-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재원이 될 수 있는 반입수수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 3,000억원 + α 의 지역지원 예정

④ 넷째, 지역 지원금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유치지역 지자체내에 특별회계를 설치

- 특별지원금과 수수료 징수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, 동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가 직접 지원사업계획을 수립,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
- 아울러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함으로써 지방교부세 감액 없이 지원금이 100%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

⑤ 다섯째, 유치지역의 개발 촉진과 지원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특례규정을 도입

- 유치지역에 대해 국·공유재산의 대부, 국고보조금 인상, 공사입찰자격 제한,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특례 규정

□ 앞으로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동 특별법안이 통과 될 경우 이에 맞춰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, 공고하고 금년내 부지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

<별첨 1>

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유사제도

구분	방사성 폐기물 반입수수료(안)	폐기물 반입수수료	물이용부담금
근거	- 방사성 폐기물유치지역지원특별법(안) - 반입수수료에 대한 규정 마련	- 폐기물관리법 제5조 - 반입수수료의 징수 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1조(주변 지역지원기금)	-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9조 - 물이용부담금의 부과,징수 - 동법 제13조(주민지원사업등)
재원 및 지원 실적	-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자가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하게 한 자로부터 징수 - 수수료의 규모는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규정 예정	- 반입수수료 10%이내에서 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”가 주민지원기금 조성 지원 - 생활폐기물(톤당 16,320원) - 사업장폐기물(톤당 18,070원 ~ 47,127원) - 수도권매립지(00) 150억원	-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- 톤당 120원(상수도료에 병과) - 한강수계관리기금 일부를 지자체 특별회계로 배정 주민지원사업에 사용 - 한강수계(03) 146억원
지원 대상	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이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(시·군·자치구)	- 매립시설 부지경계로부터 2km이내 직접영향권 주민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 - 주변영향지역은 지자체를 통해 간접지원	상수원과의 거리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 차등지원
지원 사업	전기요금보조사업, 홍보사업, 육영사업, 기타 복리사업 등	- 편익시설 설치, 주거환경개선 등의 간접지원 - 난방비보조등 현금성 지원	- 편익시설 설치 등 간접지원 - 장학금, 주택개량비 지원, 의료비보조등 현금성 지원
사업 관련자	유치지역지원위원회, 한수원 해당지자체	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, 해당지자체	한강수계 관리위원회, 해당지자체